

수입부가세납부유예시 DDP조건의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

Q 당사는 현재 수입부가세납부유예를 받고 있는데 DDP조건의 수입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DDP조건은 부가세매입세액불공제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수입부가세납부유예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데, 그냥 수입부가세납부유예로 신고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A 수입부가세납부유예는 귀사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유예하는 것인데, DDP조건의 수입품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액은 귀사가 부담하지 않기때문에 납부유예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세액자체를 신고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건물임차료 내 주차료가 포함된 경우 회계처리 문의

Q 공유오피스를 임차하여 사용 중입니다.
주차료 및 회의실 사용비를 임차료에 포함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청구 받습니다.

주차 서비스는 당사 임직원과 손님들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차서비스를 당사 임직원이 사용할 경우, 사용한 임직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Q. 1) 세금계산서는 1장만 작성되고, 적요도 통합하여 '0월 임차료'로 발행됩니다. 주차비 및 기타비용 포함하여 전액 임차료로 잡고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주차비용만큼 직원 청구분을 비용에서 제하고, 매입공제도 그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만 받아야할지?

회계 및 세무적으로 바른처리에 대해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A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는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제 직원이 비용부담하는 부분만큼은 비용에서도 제외하고 매입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처리시에도 회사부담부분만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올바른 세무회계처리 방법입니다.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 신설 공사 시 타 업체와의 비용부담 관련

Q 당사와 타사가 구분하여 사용할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 신설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에서 전체공사를 진행하고 일부는 당사에서, 나머지는 타 업체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타 업체가 사용하지만 당사가 대신 지어준 등에 대해서는 공사완료 후 금액을 청구하여 받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당사는 우리가 사용하는 등에 대해서만 자산처리하는것이 문제가 없나요?

당사가 자산처리할 금액은 당사가 공사한 금액에서 타 업체에게 수령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A 귀사가 전체 컨테이너 공사를 완료후 일부를 타업체에 매각하는 거래라면 전체자산 등록후 매각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애초부터 타업체와 귀사의 컨테이너의 귀속이 명확하게 구분된 상태에서 귀사가 단순대행업무만 이행하였다면 귀사 사용부분에 대해서만 자산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가 협상중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Q 당사(공급자)와 구매자간 판매단가 책정에 이견이 있어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경우, 공급이 완료된 월의 세금계산서를 우선 당사(공급자)가 책정한 공급가액으로 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일 경우 공급이 완료된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우선 공급자가 책정한 세금계산서기준으로 공급자와 구매자는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신고를 한후 추후 공급가액 재 확정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A 공급가액이 다툼이 있는 경우라도 공급시기에 우선 세금계산서 발급후 추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우선 귀사가 책정된 금액으로 발급후 이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가액 다툼이 있다하여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자체를 안하고 추후 발급하면 미발급이나 지연발급 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